고용보험(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정

- 1. 건 명: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시송달 명단 참조
- 4. 공고기간 : 2024.1.11. ~ 2024.1.25.(15일간)
-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실업급여팀(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 파스텔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23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경민 (Tel. 031-231-7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24. 1. 11. ~ 2024. 1. 25.)

연	27 14	201 A)	Z ;	서류의 주요내용			አብዛኒ ነዕ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송달불능 사유
1	추0훈	85.4.7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당 이득 처분 (반환명령처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건설코킹에서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함	- 해당실업인정기간의 반환액: 985,080원 - 총 반환명령액: 985,080원	'23.12.8 등 총 2회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불가 (연락 미수신)